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8761호

시행일자 2019. 10. 29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**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**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33호 (2019.10.25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5호, 2019.7.3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주요내용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개정(보건복지부령 제678호, 2019. 10. 24.)에 따라 고시의 근거 조항을 법 시행규칙 "제20조제4항"에서 "제20조제1항 및 제4항"으로 현행화

나. 시행일 : 발령일부터

다. 관련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☎044-202-2737)

붙 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